

#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0월 5일,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4. 10. 13) 상정
- 제115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(2004. 10. 13)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조 재 형)

가. 제안이유

-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이나 소송발생에 대비하여 분야 전문 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·민사소송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금까지는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4인 이내에서 위촉·운영 하였으나 앞으로는, 6인 이내까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코자 함.

(안 제2조제1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<input type="radio"/> 전문가를 확대하여 위촉한다고 하여도 분야별 승소율이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?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2인 추가 위촉시 예산소요는?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추가 위촉할 대상 분야는?</p>	<p><input type="radio"/> 현재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부족하여 자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향후 충분한 자문을 통하여 승소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됨.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연간 약 720만원 소요 예정임.</p> <p><input type="radio"/> 환경 및 의료분야와 지방행정 경험에 많은 유능한 법률전문가로 위촉하고자 함.</p>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98호
의결 년월일	2004. 10. 22 (제115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10. 5.

제출자 : 부천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적 자문이나 소송발생에 대비하여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으로써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해당분야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·민사소송 사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지금까지는 시에서 고문변호사를 4인이내에서 위촉·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, 6인이내까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함.(안 제2조제1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중 “4인이내의”를 “6인이내의” 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시장은 개 업중인 변호사중에서 <u>4인이내의</u>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. 단, 고문변호사중 2분의 1은 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(위촉 및 해촉) ①----- -----<u>6인이내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